



#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

수신 수신처 참조

(경유)

제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모집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협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, 사회참여확대,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“삶의 질”향상을 목적으로 설립(1989.7.15.)되었으며 경기도 산하 31개 시·군별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장애인 단체입니다.(법인허가 보사부 133호)
3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작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본 협회는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「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지원 사업」을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.
4. 올바른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각 권역별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체 모집에 많은 안내와 홍보를 요청하는 바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교육 미실시 사업체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

※ 금융이나 보험 등 영리를 추구하는 홍보나 영업이 절대 아님

- 붙임 1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 안내문 1부.  
2.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경기도장애인식개선교육원 안내문 1부 끝.

##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



수신처: 경기동부상공회의소, 경기북부상공회의소, 고양상공회의소, 광명상공회의소, 광주하남상공회의소, 군포상공회의소, 김포상공회의소, 부천상공회의소, 성남상공회의소, 수원상공회의소, 시흥상공회의소, 안산상공회의소, 안성상공회의소, 안양과천상공회의소, 오산상공회의소, 용인상공회의소, 의왕상공회의소, 이천상공회의소, 파주상공회의소, 평택상공회의소, 포천상공회의소, 화성상공회의소

담당 박종진

법인행정국장 한은정

사무처장 김원종

회장 김기호

시행 경기고용 2200-037 (2019. 3. 8.)

(접수) ( . . . )

우 163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24번길 17

/ www.kgppd.or.kr

전화 031)247-7721 / 전송 031)246-7721

/ e-mail kgppd@hanmail.net / 비공개(7)

#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

-교육기관: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-

## 1. 추진배경
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(17.11.28) 및 제5조의2에 의거 '18. 5. 29 부터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결정
-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업주의 부담 경감 기여
- 평소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업주와 사업체 직원들에게 장애인 과 대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로 장애인 대한 편견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고,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면 강의로 교육 효과성 제고

## 2. 교육 대상 및 운영체계

- 300인 미만 중·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대상
- 3월부터 선착순 무료교육(교육비 소진 시 유료교육 전환)

## 3. 기타 참고사항

- (과태료)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문 의 :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 사업 담당(070-5117-8295)
- 접 수 : 팩스 031-246-7721 /이메일 kgppd@hanmail.net

사업수행:  **시단 KAPPO 법인**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
Korean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

사업지원: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'일하는 행복, 함께하는 사회'

# 경기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무료 교육 사업체 모집

'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무료 교육'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주 부담 감경 및 장애인 강사들의 활성화와 보다 효과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이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체에 전액무료로 출강하고 있습니다.

## 근거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거, 2018년 5월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. (모든 사업체는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)

## 사업대상

300인 미만의 중·소규모 사업체  
3월부터 선착순 무료교육 (교육비 소진 시 유료교육 전환)

※ 상기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사업으로 금융이나 보험 등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종보가 아니며 영업행위와 병행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불법임과 동시에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.

## 신청방법

이메일접수(kgpdd@hanmail.net)

문의 : 070-5117-8295

(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인식개선 사업담당)

교육 미실시 사업체는  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
부과됩니다!



##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지원신청서

신청인	사업장명		업종	
	대표자성명		전화번호	
	상시근로자수		장애인근로자수	
	소재지			
신청내용 (희망내용)	교육일시	월          일	오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시          분 오후 <input type="checkbox"/> 시          분	
	교육장소	사업장내 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장소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
기타				
	※ 희망신청내용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조정 결정됩니다.			

위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무료강사지원을 신청합니다.

2019년 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 일

신청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

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
GyeongGi-Do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